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철도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9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1. ~ 4.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정보제공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를 각각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6까지로 하고,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정보제공 요청 등) 법 제21조의4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와 관련해서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한다.

제21조의2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12조의2제2항 관련)

대상기관	요청 정보의 내용	관련 근거	장애 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자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각장애, 청각장애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마약류 중독자
시·도지사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가. 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나. 정신질환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44조	정신질환 (알코올 관련 장애포함)
병무청장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정신질환 (알코올 관련 장애포함), 뇌전증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 재직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전역 조치된 사람에 대한 자료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제1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정보제공 요청 등) ① 법 제11 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 을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유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u> <u>1. 보건복지부장관</u> <u>2. 병무청장</u> <u>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u> <u>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 령관</u> <u>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 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 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로 서 그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u> <u>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2</u>

	<u>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20조의3(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정보제공 요청 등) 법 제21조의4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와 관련해서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한다.</u>
<u>제20조의3 ~ 제20조의5 (생 략)</u> 제21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은 <u>별표 1의2와 같다.</u>	<u>제20조의4 ~ 제20조의6 (현행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와 같음)</u> 제21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 ----- ----- <u>별표 1의3과</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연 락 처	(044) 201 - 4825